

#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내 청년단체의 다양한 영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청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도내 청년의 영화 활동 역량강화 및 영화 콘텐츠 육성
- 주최/주관: 경상남도/(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사업내용: 도내 청년단체의 영화활동 지원(영화제작, 영화연구, 영화기획 등)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이행약정체결일 ~ 2023. 12. 15.  
※ 기간 내 지원사업 관련 대금 지출(원천세 포함)을 모두 완료해야 함
- 지원규모: 총 4건 내외(건당 5~6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지원내용: 경남을 기반으로 한 영화 관련 다양한 활동 지원 및 멘토링 지원

지원유형	세부내용
영화제작	- 경남 지역을 소재로 한 영화 촬영 및 제작 등 ※ 해당유형으로 사업 신청 시 영화제작 계획서 제출 필수(서식 참조)
영화연구	- 영화작품을 기반으로 한 영화 연구 등 비평, 분석 지원 - 경남 지역 영화사(기록), 영화인물, 영화작품 및 시나리오 연구 등
영화기획	- 영화 관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영화 축제 및 행사 운영지원 등 - 전시, 영화제, 상영회, 홍보관 등 영화 관련 프로모션 지원 - 영화를 통한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등

## 멘토링 지원

- 운영기간: 2023. 7월 중(단체별 1~2회) <예정>
- 운영방법 ※ 선정단체 대상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선정단체 희망 멘토 의견 청취 후 매칭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선정단체는 사업기획, 세부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멘토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멘토링 결과에 따라 초기 사업계획 수정 반영 가능
  - 단체별 멘토링을 별도 진행하며 멘토, 멘티의 일정에 따라 자율 추진 가능

## 3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관련 프로젝트
  - 신청자격: 영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경남의 청년단체
    - 공고일 기준, 단체 소재지가 경남이며  
경남에 소재지\*를 둔 3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
- \* 경남 거주자 및 경남 소재 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단, 대표자는 경남 거주자여야 함)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유사 사업으로 당해연도 진흥원, 경상남도, 타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경상남도 및 진흥원의 참여 제한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단체 회원
- 최근 2년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내역이 허위일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

## 4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2023. 6. 8.(목)~6. 28.(수) / 21일 간
  - 접수기간: 2023. 6. 14.(수)~6. 28.(수) **17:00** / 15일 간
    -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www.ncas.or.kr](http://www.ncas.or.kr)
  -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 공모명: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
    - 공모기관(보조금 주관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NCAS 시스템에서 접수기간에만 제출 가능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요망

##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형식	내용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파일 (hwp 또는 hwpX)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단체 소개서 - 증빙서류 ① [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 및 회원]청년 증빙+거주지 또는 소재지 증빙 ※ 해당사항 택1하여 증빙 · 청년+거주지 증빙: 주민등록초본 · 청년+소재지 증빙: 주민등록초본+경남 소재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등	서식 참조 (필수)
1-1	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 ※ 필요 서류별 날인 필수	PDF파일	- 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예방 서약서 - 청렴 이행서약서	
2	발표자료	PPT 또는 PDF파일	- 제출한 신청서 위주의 내용으로 발표자료 작성(10분 이내 분량)	자유 서식 (필수)
3	[영화제작 유형 선택 시] 영화제작 계획서	한글파일 (hwp 또는 hwpX)	- 작품개요 - 촬영계획서	서식 참조 (해당자 필수)
3-1	[영화제작 유형 선택 시] 영화제작 계획서 (스캔본) ※ 필요 서류별 날인 필수	PDF파일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	

※ 상기 제출서류들을 ZIP파일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

※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Windows PC 환경에서 확인 가능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 맥OS에서 작성 시 파일 깨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호환여부 확인 필수
- 제출하는 스캔파일은 필수정보 인식이 가능한 해상도의 파일 제출 필요  
(너무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필수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심사불가)
-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 등으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  
  - 압축파일명 : 2023경남청년영화활동지원\_사업명\_단체명.zip
  -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zip파일명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여 각각 업로드

※ 제출파일 예시



- 상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에는 상기 제출서류 외 최종 수행계획서,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등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http://www.ncas.or.kr))을 통한 신청·접수 방법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단체명의)
  - 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www.gcaf.or.kr](http://www.gcaf.or.kr))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③ ②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를 zip파일로 압축
  - ④ 접수기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
  - ⑤ 메인 화면에서 보조금 주관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선택
  - ⑥ '현재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목록에서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 선택
  - ⑦ [신청개요]란 작성 후 [첨부파일]란에 ③의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최종제출
- ※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나,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 내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해야함  
 ※ 지원신청 시 지원사업명 확인 필수

## 5 추진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23. 6. 8.(목)~6. 28.(수)	
지원신청서 접수	2023. 6. 14.(수)~6. 28.(수) 17:00	NCAS
사전 서류검토(적격여부 등)	2023. 6. 28.(수)~7. 5.(수)	
선정 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2023. 7. 6.(목) <예정>	
선정발표	2023. 7. 10.(월) <예정>	누리집 및 개별통보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2023. 7월 중	
지원사업 진행	약정체결일~2023. 12. 15.(금)	멘토링
결과보고 및 정산	2023. 12월~2024. 2월	

## 6 선정방식

### ○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

####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실시

- ※ 발표심사 안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일시/장소: 2023. 7. 6.(목) 오후 예정 / 장소 미정(창원 또는 김해)
  - 발표방법: 신청 시 제출한 발표자료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발표
  - 발표자: 신청주체(신청자 본인, 제작사 대표 혹은 작품 감독)

- 적격여부 검토 결과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격사유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 심사기준

구분	심사내용	평가항목		비율
서류심사	제출서류 전체	<b>총점</b>		<b>100점</b>
		- 사업 이해도 및 적합성	15점	<b>30%</b>
		- 사업 기획력 및 타당성	20점	
		- 사업 가능성 및 결과물	20점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20점	
		- 수행 역량	15점	
		- 예산활용 적정성	10점	
발표심사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 인터뷰	<b>총점</b>		
		- 전문성 및 추진의지	10점	<b>70%</b>
		- 사업기획 및 내용	20점	
		- 지역사회 공헌	10점	
		- 성장가능성	20점	
		- 사업비의 적정성	10점	
		- 사업추진관리	20점	
		- 수행 역량	10점	

※ 최종 점수 70점 미만 부적격 처리

○ 선정발표: 2023. 7. 10.(월) 예정 ※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지

## 7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규정,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에게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대표자 및 회원 개개인의 인건비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신청단체 또는 작품 제작자 등에 귀속되나, 경상남도와 진흥원의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초상권 등 모든 분쟁사항 대한 일체의 책임과 관리는 신청단체에게 있습니다.
- 지원금은 보조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본 지원사업에 1건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 불가)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이행약정 체결 시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주체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합니다. ※ 선정 후 지원금 집행·정산 관련 별도 교육 예정
- 지원금 교부 이후 집행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교부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결과물(홍보물, 책자 크레딧, 영화 크레딧 등)에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의 지원 작품임을 명시해야합니다.
- 이행약정 기간 내 지원사업 추진 완료가 원칙이며, 이행약정 체결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3년 간 동일 사업에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이 주관하는 성과공유회, 교육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 시 고용보험(예술인 고용보험 포함), 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최종 선정 이후 지원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 단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진흥원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동일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와 중복지원 불가
-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8 문 의

- 지원사업 관련: 대중문화산업팀 윤지수  
☎ 055)230-8821    ✉ [jsyn@gcaf.or.kr](mailto:jsyn@gcaf.or.kr)
- 시스템 관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1577-8751

항목	용도	비고
<b>인건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사례비(프로그래밍, 전시기획, 특강, 모더레이터 등)</li> <li>- 사진촬영, 공연팀, 진행자 인건비 등 기타 사례비</li> <li>- 행사 보조요원, 사업보조인력 사례비</li> <li>- 연출, 촬영, 조명, 음향 등 스태프 인건비</li> <li>- 배우 출연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li> <li>• 지원금으로 대표자 및 내부직원(회원) 인건비(사례비) 편성 불가(단, 직접적으로 맡은 역할이 있고, 결과물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20% 이내에서 사례비로 편성 가능-선정 후 담당자 협의 필수)</li> </ul>
<b>일반수용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터 제작,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출력비</li> <li>- 각종 성과물 및 교육 자료 등 인쇄비</li> <li>-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li> <li>- 필름, 소품, 의상 등 재료비</li> <li>- 사업추진을 위한 광고 및 홍보 수수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li> <li>• 재료비는 단가 10만원 이하 기준</li> <li>• 상품 및 경품 구매 불가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제작한 홍보물품의 이벤트 사용은 가능-선정 후 담당자 협의 필수)</li> </ul>
<b>임차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개최되는 장소, 건물 등의 임차료</li> <li>- 사업 진행에 따른 각종 물품 대여비(장비, 의자 등)</li> <li>- 촬영, 조명, 음향 등 장비 임차료</li> <li>- 작품제작을 위한 의상, 소품, 촬영장소, 스튜디오 등의 일시 임차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편성 가능</li> </ul>
<b>진행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회의식비, 다과비</li> <li>-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비</li> <li>- 사업추진을 위한 숙박비(실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가능</li> <li>• 회의식비는 1식 8,000원 이하, 다과비는 1인 5,000원 이하 기준</li> <li>• 교통비는 실비기준 인정(자차 운행 시 시외버스요금 기준)</li> <li>• 숙박비는 1인당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밖의 지역 7만원 기준</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후 교부신청 시 진흥원 담당자 협의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구입 불가, 사업과 관계없는 식사비 지원 불가</li> <li>• 인건비는 단체의 대표, 내부 직원(회원)이나 가족 대상으로 지급 불가</li> <li>• 가구(의자, 책상, 인테리어 소품), 전산기기 및 전산소모품(프린터, 프린터 잉크, 배터리 등), 의복, 침구 등 자산 및 개인용품으로서 소장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불인정</li> <li>•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주차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계좌이체 수수료), 과태료 불인정</li> <li>•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li> <li>• 계좌이체 수수료, 카드사용내역 알림 SMS 수신비용 등 편성·집행 불가</li> <li>• 이 밖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불인정</li> </ul>		